

## 항 고 심 판 소 심 결 문

심판번호 : 93항원1154

심결분류 : ㉔280.532-W(C04B)

사건표시 : 1990년 특허출원 제10710호 『세라믹 재료』의 거절사정불복

항고심판청구인 : 최봉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5 한양아파트 5동 701호

청구대리인 : 변리사 이양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7

원사정 : 1993.5.31.자 본원거절사정

주문 : 원사정을 파기하고 본원을 심사국에 환송한다.

이유

1. 본원발명은 1990.7.14.자 출원된 것으로서 발명의 요지는 항고심판계속중에 제출한 보정명세서의 기재로 보아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1. 고주파 손실재 5-94중량%와 규산질함유 무기재료 6-95중량%를 혼합 소성하여서된 세라믹재료.

2. 제1항에 있어서, 고주파 손실재는 자성재, 유전재, 도전재 중에서 선택된 1종이상을 함유하는 세라믹재료.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고주파 손실재는 자성재, 유전재, 도전재를 주재료로하는 산업폐기물의 분쇄물인 세라믹재료.

5. 제1항에 있어서 규산질 함유 무기재료는 산업폐기물 분쇄물인 세라믹재료.

6. 고주파 손실재 5-94중량%와 규산질 함유무기재료 6-95중량%를 혼합 소성 분쇄한 분말 5-99중량%에 결합재 1-95중량%를 첨가하여 성형한 세라믹재료.

7. 제6항에 있어서 결합재는 무기 또는 유기재료인 세라믹재료.

8. 고주파 손실재 5-94중량%와 규산질함유 무기재료 6-95중량%를 혼합소성 분쇄한 분말 5-99중량%에 도전재 1-45중량%를 첨가하여 성형한 세라믹재료인 것을 알 수 있다.

2. 원사정은 본원발명을 1990.2.10.자 발행된 (발행처 ; 반도출판사) "고도기술세라믹스" 제114면 및 제136면 (이하 "인용예" 라 함)에 기재된 것으로 인정하여 특허법 (1990.1.13.자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6조 제2항(원사정은 법률 제4207호 를 적용하고 있음)의 규정에 의거 특허받을 수 없다고 거절사정한 후 심사전치과정에서는 본원발명을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불비로 인정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고 재차 거절함으로써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3. 항고심판청구인은 원사정을 파기한다. 본원발명은 특허한다라는 심결을 구하고 그 이유의 요지로서 인용예에는 본원발명과 같은 기술적구성 및 작용효과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본원발명을 거절한 원사정은 심사미진의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명세서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심사전치과정의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차 명세서를 명료히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4. 본안을 살핀다.

심사전치과정에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보정서(1993.8.17.자 제출)에 의하면 본원발명은 전자파흡수체, 발열체, 축열체 등에 사용되는 세라믹 재료에 관한 것으로 자성재, 유전재, 도전재로 부터 선택되는 고주파손실재와 모래, 규사, 점토, 코디에라이트, 뮤라이트 등에서 선택되는 규산질함유 무기재료를 일정비율 혼합, 소성하는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고 또 상세한 설명에는 고주파손실재로 구체적인 성분을 기재하면서 실시예등도 함께 기재하여 본원발명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료히 기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전자파흡수체와 규산질함유 무기재료를 일정비율 혼합, 소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와 같은 기재는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어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

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원발명을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불비로 인정하여 거절한 원사정은 심사전치과정에서 제출한 상기 보정서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사정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사정을 파기하고 본원발명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심사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1994.11.30.

심판장 항고심판관 윤여범

항고심판관 주수현

항고심판관 연원석